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한정애의원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8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 의 자 : 한정애 · 정희용 · 장종태
조인철 · 최혁진 · 강선우
김용태 · 염태영 · 이수진
김성희 · 이학영 · 송옥주
의원(12인)

제안이유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 중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4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현재의 열에너지가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기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건물 및 지역냉난방 시스템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목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열에너지 관련 통계 구축 및 실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 역시 여러 에너지 계획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은 물론 청정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의 비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의 확대 및 의무화, 열에너지의 고효율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청정 열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체계를 법률로 제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열에너지의 고효율·합리적 이용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열에너지, 청정열, 열에너지 설비 등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열에너지 공급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정열 확대를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청정열 기술개발과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사업비를 조성하고, 연구기관·기업연구소·대학 등과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이용·보급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공공부문 신축 건축물 등에 청정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열 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과하며,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청정열 공급 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공급인증서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청정열원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청정열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집적화단지를 추진하고, 설비 전환·신규 설치 등에 대해 보조금·융자·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산업단지의 열수요 특성에 기반한 청정열 사용 확대를 지원하고, 노후 설비 전환 및 열거래 플랫폼 구축 등 산업부문 전환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차.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자·지역경제·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환 과정의 사회·경제적 영향 완화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의 확대, 열에너지의 고효율 및 합리적 이용, 그리고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하여 열에너지 공급 및 소비의 청정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에너지”란 연료의 연소, 재생에너지,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여 회피 불가능한 폐열 등을 통하여 공급되는 열 형태의 에너지로서 냉·난방·급탕·취사·산업공정 등에서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2. “연료”란 「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를 말한다.
3. “청정열”이란 화석연료의 연소를 최소화하거나 배제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방식으로 생산·이용되는 열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생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열
- 나. 미활용 폐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에 따른 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열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정열
4. “열에너지 공급자”란 열에너지의 소비를 위하여 열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열에너지 설비”란 열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열을 생산 및 재활용하거나 저장·이송·공급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시설을 말한다.
6. “열에너지 공급관리”란 열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 생산·변환·저장·이송·분배 및 비축의 전 과정을 계획·운영·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열에너지 수요관리”란 열에너지의 소비 효율을 높이고 공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요자의 열 이용 행태를 조정·최적화하거나 절감·대체하는 제도적·기술적 활동을 말한다.
8. “열에너지 취약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등으로 열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어 열에너지에 대한 접근 향상과 안정적인 소비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급자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 부문과

건물 부문의 열에너지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정열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청정열에너지의 개발·생산·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열에너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청정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청정열에너지를 공급 및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청정열에너지 전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교육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열에너지 공급자는 청정열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화 촉진과 청정열에너지의 환경친화적인 생산·저장·운송·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정열에너지의 이용·보급,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열에너지 청정 전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청정열에너지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청정열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열에너지생산량 중 청정열의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청정열에너지의 기술수준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청정열에너지의 활용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청정열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열에너지의 활용 및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청정열에너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청정열에너지원별 지역 적용 기술의 이용·보급 목표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 방법
 4. 지역내 청정열에너지원의 잠재량 분석 및 활용 계획
 5. 집단에너지, 개별난방, 분산형 열공급 등 열공급 방식별 적정 지역의 구분 및 구역별 청정열 전환 방향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및 청정열에너지 복지 추진계획
 7. 직전 시행 계획의 이행 점검 및 평가
 8. 그 밖에 지역 청정열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및 평가 사항을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정열에너지의 종류별로 청정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정열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청정열에너지의 활용,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청정열원에 의하여 공급되는 열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청정열에너지의 이용·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심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청정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청정열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 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청정열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청정열에너지 공급 및 이용 의무화 지원
4. 청정열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5. 열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청정열에너지 복지사업
6. 그 밖에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청정열에너지 공급 및 이용의무화

제12조(청정열에너지에의 투자 권고 및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청정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열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청정열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열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청정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

장 및 집단 및 개별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청정열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청정열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 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청정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에너지 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열원을 이용하여 의무적으로 공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의무공급량의 비율 및 산정기준은 국가의 청정열에너지 보급목표, 총열에너지 공급량, 지역별 열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부는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특정 청정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총 의무공급량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청정열원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청정열원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초과 이행 공급량의 이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정열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청정열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의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 평균 열요금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되며, 귀속된 재원은 청정열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청정 열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⑤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청정열에너지 공급의무가 최초 적용되는 연도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청정열원 공급인증서 발급 등) ① 청정열원을 이용하여 열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청정열원공급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청정열원을 이용한 열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청정열원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청정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청정열원공급자
2. 청정열원 종류별 공급량
3. 공급기간

제4장 청정열에너지 보급 및 지원

제16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청정열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청정열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청정열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청정열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청정열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청정열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청정열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청정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융자,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석연료 기반의 열에너지 설비를 청정열에너지 설비로 전환하는 자
 2. 청정열에너지 설비를 새로 설치·구매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정열에너지 설비를 공급·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정부는 청정열에너지 설비의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술 수준,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산업부문 청정열에너지 사용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열수요 특성, 산업 구조,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단 에너지사업자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청정열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정열에너지 사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후 열병합발전·보일러 등의 청정열에너지 설비 전환사업
2. 산업단지 청정열에너지 공급 인프라 개선 및 효율화 사업
3. 열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및 열거래 플랫폼 구축사업

③ 정부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탈탄소화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민관 협력사업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재생열 이용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재정적·세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지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 미활용 폐열의 회수 및 활용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의 회수 및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폐열 이용 기술개발, 열교환 네트워크 구축, 산업 간 열 연계망 조성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및 기업은 미활용 폐열의 회수 및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활용 폐열 이용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미활용 폐열 이용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재정적·세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생열에 대한 지원과는 차등을 두며, 지원 규모는 그 이하하여야 한다.

제5장 청정열에너지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20조(통계의 구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청정열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열에너지의 수요·공급
2. 국내외 청정열에너지의 수요·공급
3.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열에너지 및 청정열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청정열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체계적인 통계구축을 위하여 제2항에 관한 정보의 측정·검증·보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청정열에너지 이용에 대한 혜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열에너지 요금의 산정기준, 조정절차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청정열에너지의 초기시장 형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정열에너지 이용에 따른 열에너지에 대한 요금 보조 또는 차액 보전제도
2. 청정열에너지 공급사업자의 초기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한 요금 조정 인센티브
3. 청정열에너지 이용 소비자에 대한 세제 혜택

③ 정부는 청정열에너지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화석연료 기반 열소비자의 탄소배출비용 등을 요금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의 청정열에너지 공급 여건과 주민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요금감면, 지역별 지원금, 보조금 등 보완적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청정열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청정열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청정열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청정열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정열에너지 전환에 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① 정부는 청정열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산업 구조 변화,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동자, 지역사회, 중소기업, 열에너지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서 정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정열에너지 설비, 기술, 및 인력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역량 강화,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2. 중소·중견기업의 공정전환, 설비교체, 효율화 등에 필요한 재정·세제·기술 지원
 3. 청정열에너지 도입 과정에서 열요금 변동 등에 따른 열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특성과 산업구조, 열수요 특성, 인구구조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청정열에너지 도입이 일자리, 산업공정 구조, 기술경쟁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청정열에너지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청정열에너지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청정열에너지 기반구축에 관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청정열에너지 기반구축에 관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청정열에너지 기반구축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제25조(하자보수) ① 청정열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
에 대하여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
는 증서를 청정열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청정열에너지 설비 및 하
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청정열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청정열에너지 보급사
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정열에
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청정열에너
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청정열에너지 설비에 대

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청정열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청정열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제27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청정열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인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열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정열에너지 관련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 청정열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3. 청정열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4.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관리
 5. 청정열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6. 보급된 청정열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7. 청정열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관리
 8. 청정열에너지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9. 청정열에너지 통계관리
 10. 청정열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11. 청정열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12. 청정열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13. 청정열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관리
 14.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5. 그 밖에 청정열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